

## 【사건번호 2017-018 등】 국토교통부 등 자동차정비업체 등록데이터 제공거부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등 16개 기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정비업체 등록데이터 9개 항목
- 데이터 신청 목적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및 통계자료 작성
- 제공거부사유
  - 국토부는 해당 정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공거부
  - 지자체는 신청데이터 중 일부항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공거부

### 2.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정보를 위치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 (국토부)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데이터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가 수집·관리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거부
    - 그러나, 이 사건 정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수집·관리하는 정보인 자동차 등록정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처분은 일관성이 없음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는데, 공공데이터법상 일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제공여부 및 항목이 다른 것이 이해되지 않음

#### 나. 피신청인 주장

- (국토교통부) 이 사건 데이터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에서는 ‘국토 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 이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입력되고 관리되는 데이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제공받는 것이 타당
- (지자체) 이 사건 데이터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일부를 제공
  - 특히, 정비업체의 면적이 대국민 서비스 될 경우, 고객이 정비업체를 선택할 때 규모가 큰 곳에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영업상 피해가 우려되어 제공거부

### 3. 사실조사

#### 가.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에 따라 등록 신청(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등록신청을 받은 지자체(시·군·구)는 정비업체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해주어야 하며(시행규칙 제111조제2항),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시행규칙 제111조제7항)

-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법 제69조제1항)
- 동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중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가 포함됨(시행규칙 제150조제1항)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법 제4조)

나.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현황

-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신청인이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9개 항목\* 중 사업자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정비업유형, 등록일자, 영업상태 등 6개 항목을 모두 제공
- \*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정비업유형(종합, 전문, 소형, 원동기), 등록일자, 영업상태(영업, 휴업, 폐업), 면적, 우편번호
- ‘면적’ 정보는 피신청인 중 일부가 제공하고 있음

다.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 정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라. 경영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판결)

- 피신청인 지자체는 이 사건 데이터 중 ‘면적’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사업장 면적의 경우, 정비업체가 특정한 범위의 고객들만 상대한다거나 외부에서 접근이 금지된 영역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에 방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으므로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시 정비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4. 조정 내용

##### 가. 조정 결정 사항

- 피신청인 지자체는 이 사건 데이터 중 관리하고 있는 미제공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함
-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나아가 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함
  - 향후 동일 데이터에 대한 제공요청 시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일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

##### 나. 조정 결정 이유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관한 등록 업무가 타 행정청(시·군·구)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자체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관련 지자체가 해당 데이터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 국토교통부가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일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 과거의 사례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도로이정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4-003 사건)
  
- 지자체는 이 사건 데이터를 정비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일부 제공 거부 하였으나,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5. 결론 : 일부 조정 성립

- 피신청인 국토부는 지자체가 생산·관리하는 데이터를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
  
- 피신청인 지자체는 대부분 조정안을 수락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나, 1개의 지자체가 여전히 정비업체의 면적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